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진희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Delay in the Entry of Disabled Children
and Parents' Perception
-Focusing on Gwangju City-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진희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지도교수 정 은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이 진 희

목 차

표 목차	iii
ABSTRACT	i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6
1. 장애아동의 취학	6
2.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10
3.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관련 연구	13
III. 연구방법	16
1. 연구대상	16
2. 연구도구	18
3. 연구절차	19
4. 자료처리	20
IV. 연구결과	21
1.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21
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과정	30
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	39

V. 논의	47
1.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47
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과정	49
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	51
VI. 결론 및 제언	53
1. 결론	53
2. 제언	55
참고문헌	56
부 록	59

표 목 차

〈표 III-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6
〈표 III-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18
〈표 IV- 1〉 취학유예 아동의 성별	21
〈표 IV- 2〉 취학유예 아동의 현재 연령	22
〈표 IV- 3〉 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23
〈표 IV- 4〉 취학유예 아동의 주된 교육기관	24
〈표 IV- 5〉 취학유예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	25
〈표 IV- 6〉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된 경위	26
〈표 IV- 7〉 취학유예 횟수	27
〈표 IV- 8〉 취학유예 신청시 제출한 서류	28
〈표 IV- 9〉 아동의 취학계획	29
〈표 IV-10〉 취학유예의 이유	30
〈표 IV-11〉 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31
〈표 IV-12〉 취학유예 결정시기	32
〈표 IV-13〉 취학유예 상담자	33
〈표 IV-14〉 취학유예 결정에 대한 상담자 조언의 도움 정도	34
〈표 IV-15〉 취학유예 결정시 어려운 점	35
〈표 IV-16〉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적응 정도	36
〈표 IV-17〉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37
〈표 IV-18〉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38
〈표 IV-19〉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	39
〈표 IV-20〉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에 대한 이유	40
〈표 IV-21〉 취학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41
〈표 IV-22〉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	42
〈표 IV-23〉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 여부	43
〈표 IV-24〉 전문상담기관의 담당 업무	44
〈표 IV-25〉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	45
〈표 IV-26〉 취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교육기관	46

ABSTRACT

An Analysis of the Delay in the Entry of Disabled Children and Parents' Perception - Focusing on Gwangju City -

by Jin-Hee Lee

Advisor : Prof. Eun-Hee Jeong, Ph. 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ntrance delay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on it to present basic data for entrance support to the parents. For the purposes, we interviewed parents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N=78) who experienced entrance delay in Gwangju using a questionnaire and a few important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respect to the current status of entrance delay, most of the delayed children were attending to special education centers because they help parents to have less burden to care children all day long and provide training on therapies. As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d a mean of more than two therapeutic services, it was founded that parents had big financial burden from the services along with their demand of the connection with therapeutic supports.

Parents obtained the information on the entrance delay system from parents of oth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ch points ou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arent education to share exact routes to obtain proper information. We found that entrance dela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universal and the systematic aspect of the delay should be considered in respect to the compulsory education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se ages are three that will be executed from 2013 according to the Special Education Law.

It seems that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epted one time or two times of delay naturally and parents's subjective judgement had a great

influence on delay decision. Therefore, for prop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atus of disabilities, appropriate guidance on entrance and parents' right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 are important conditions for compulsory education for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on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decision of dela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The parents answered that they decided to delay entrance because of delayed cognitive and physical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and difficulties of adjustment. Moth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delay decision and decided to delay entrance when their children were age of 7 and when it was two or three months immediately before entrance. As the parents could not decide delay in considering their children and surrounding conditions though they had trouble and burden on the entrance of their children, we suggest that specific parents educa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relieve them of anxiety of entrance should be developed.

Usually, they counseled with instructors or directors of care institutes the children were attending in respect to the entrance, and had difficulties in gener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choice of proper educational institutes.

However, children adjusted the institutes they attended before their entrance very well, and satisfaction of the parents was high. S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stitutes before and after entrance should be minimized for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is required on which children can use proper treatment services they need and which can help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to adjust to new environment due to entrance.

Thir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parents' perception on entrance dela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Most of the parents thought that age limit for entrance is not needed because of personal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and the need of right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present levels, but they worried about maladjustment with peers, and less attention to education. So, diversity of disabilities should be recognized and diverse learning processes and methods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educational systems in which opportunities of learning are provided after completion of compulsory education.

The subjects answered that the focus should be given on instruction of self-help skills, learning and cognition before their children enter school. In making a decision of entrance, they need professional counseling institutes,

which it is hoped give helps in choice of proper educational institutes and general assessment of their children.

They answered that the procedure to apply entrance delay is satisfying because of its simplicity, but mentioned that they had difficulties due to lack of proper preparation and inattention by schools, and their unfriendly attitudes.

So professional counseling institutes involved in entrance should be introduced and support for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nhanced along with promotion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잠재적 능력 및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아실현에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성공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도 일반교육과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교육은 장애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교육의 기회를 증진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생존권 보장의 핵심이며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강정일, 2002; 이진옥, 2004).

학교는 아동의 취학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환경으로 아동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성 기술과 상호작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공의 교육장이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정유경, 2005). 홍정기(1995)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여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학교라고 말했다.

부모에게 있어 처음으로 아이를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안과 긴장감을 가중시키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이소영, 2005). 특히 취학하는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더 가중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 유아교육 기관에 있던 장애아동이 일반초등학교 입학 시 일반아동에 비해 인지적, 사회적, 의사소통적 제한성 등으로 인해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승현, 2005).

홍혜정(2005)의 연구에서 보면, 일반아동의 취학유예에 대해 아동의 주도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의 지연, 또는 또래보다 체격이 작아서 등을 언급하고 있는 한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유경(2005)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들의 사회성 부족, 학업의 지연, 언어발달, 주의집중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취학을 유예한 후 일반초등학교에 입학시킨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학교적응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었고,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들의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학에 대한 좌절이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소우(2000)에 의하면 장애아동 부모들의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 하나가 아동의 취학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윤수영(1992)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장애 원인 및 교육에 관한 스트레스가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있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장애아동을 키우며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동의 취학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동법 제 3조 의무교육에 대해 제 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08학년도 시 · 도별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67,319명으로 그 중 장애아동은 서울 1,698명, 부산 346명, 대구 281명, 광주 180명, 전남 199명을 포함 16개 시 · 도에서 총 4,689명으로 취학유예자의 7.0%에 이른다. 또, 2005년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이 그해 전국초등학교 3,87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취학유예가 인정돼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학유예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거의 대부분 취학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어떤 교육환경에 배치되든지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이유훈, 1995).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장애와 진로에 대해 상담을 지원할 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하며(윤점룡, 1999), 부모에 대한 취학지도는 특수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전달과 도입 및 소개로써 장애아동의 교육효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과제이다. 올바른 취학지도를 통해 장애아동에게 알맞은 교육방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부모의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육에 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박화문, 1997). 또한 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장애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교는 자녀가 보다 나은 인생의 기초와 기본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취학하여야 한다(이진옥, 2004, 재인용).

특수교육의 방향이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증진 시켜주어서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오세정, 2001, 재인용)이라면 실질적인 특수교육의 실천은 취학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 분야의 중심 과제는 '특수교육 기회 확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교육의 적절성이 제고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오세정, 2001). 또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아동과 가족, 그리고 아동을 보내고 받는 기관의 교사들,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가의 협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취학은 아동에게 있어 교육과정의 변화 이외에도 물리적, 환경적인 변화를 겪게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유아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취학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한 실정이다(김승현, 200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적절성이 제고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아동들이 취학유예를 하고 있고, 그 부모들은 취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와 결정과정에 대한 배경, 부모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취학유예 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연령이나 학력, 경제수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의 장애아동 취학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현황을 알아보고, 취학유예를 결정하는 과정과 부모들의 인식을 부모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는 장애아동의 교육기회와 수월성 보장, 그리고 부모에 대한 지원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과정은 어떠한가 ?

셋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취학유예

이 연구에서의 취학유예란 초·중등 교육법 제 14조 1항의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경우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아동의 취학

1) 장애아동의 취학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transition)는 아동에게 있어 새로운 환경 하나가 더 첨가되는 것만이 아니다. 기존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성이 전혀 없는 가족과 학교,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기타 다른 자원들과 학교 사이의 관계성이 아동의 생활에 새롭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가족에게 적응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기 전에 아동이 겪는 가장 큰 과거와의 갑작스럽고 영구적인 분리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특히, 아동이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동들에 비해 취학전 특수교육과 통합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에 취학전 프로그램에서 초등 일반학교로 분리되는 충격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조운경 외, 2007).

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지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들을 사용하도록 기대되어진다. 초등학교 환경에서는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관계들,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아동들을 기다리고 있다(Loyd, 1999). 서로 다른 교육적 환경사이에는 교육 과정적 요구, 교수방식, 행동적 기대, 물리적 환경의 배치, 아동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 등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장대은, 1997).

취학을 앞둔 장애아동의 부모가 가지는 부담감은 일반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로의 취학 그 자체만으로도 생애 처음의 공교육을 시작하게 된다는 데서 기인하는 걱정과 부담감이 올 수 있다. 사실상 일반 초등학교로의 취학은 대부분의 장

애아동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공식적인 통합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다. 통합교육의 흐름이 대세인 현재, 점차 많은 장애아동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초등학교로의 취학을 선택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수혜율 조차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조기교육기관의 통합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초등학교로의 취학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취학 전 조기교육기관에서의 통합 경험을 가진다 할지라도 초·중등학교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었다는 기쁨, 기대와 함께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친구관계는 잘 이루어 나갈지,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가진다(이소영, 2005). 또한, 장애아동의 행동적 특성, 그 동안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사회적 위축, 사회적 기술의 결핍, 일반학급 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태도, 부모들의 과잉보호 경향, 일반아동 부모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에서 비롯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김승현, 2005).

Sullivan(1999)은 많은 부모들이 성공적인 학교 경험을 위해 그들의 자녀들이 적절한 문해 기술, 사회적 기술, 자존감, 또래와의 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단순히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식되는 장애관과 특수교육의 현실적 문제와도 맞물린다(허정연, 1998). 초등학교 취학직전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장애아동 양육과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과 대인관계에서의 긴장,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과 비관적 태도를 갖는다. 이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이 장애아동의 부모와 가족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승현, 2005).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취학시기가 다가올수록 자녀의 성장발달과 교육에 대한 욕구가 심화되고(석재은, 1992), 새로운 초등학교 환경과 스케줄에 적응해야

하며, 아동에 대한 목표와 기대감을 수정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대해 배워야 하며, 초등학교 교사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들에게 적절한 부모참여 활동을 판별해야 한다. 진학할 교육기관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와 도전들 때문에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스트레스의 증가를 경험하며,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이소영, 2005).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아동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전이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며, 필요할 때 조정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애아동이 취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적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반아동과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아동과 다른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동을 학생으로 수용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도 합당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서울장애인복지관, 2002).

2) 장애아동의 취학을 위한 지원

장애아동의 취학시기가 다가오면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위한 최선의 교육체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자녀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최선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선택하며, 학교 배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Hanson et al., 2000, 김미라, 2005, 재인용).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들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유아들 보다 전이시 특별히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La Paro, Pinata, Cox, 2000), 그것은 초기에 장애유아와 그 가족이 경험하는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장애유아는 이전 상황과 다른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야 하고, 이전에 배운 기술을 일반화해야 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하고, 수적인 면에서 더 적은 교사의 주의 집중하에서 더 많은 주의 또래들을 포함하는 큰 집단과 가능해야하고, 또한 유아교육 수준에서 보다는 좀더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들 또한 새로운 규칙과 일과들에 적응해야 하고, 자녀에 대한 새로운 스케줄과 서비스를 조정해야하고, 친숙하고 지원적인 프로

그램을 떠나서 유아의 장애가 다시 확인되고 표찰이 붙여지는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야만 하는 스트레스에 직면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보내고 받는 전문가들에게는 두 프로그램 사이의 차이로 인해 서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 관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프로그램 사이의 차이점은 적격성 기준과 유아가 표찰 되어지는 방법, 교육과정과 서비스 전달의 강조점, 가족참여, 프로그램 장소, 프로그램 의사결정과 행정적 절차 등이 제기 되고 있다.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관계성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보고 되고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돕는 전이 지원 서비스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조윤경 외, 2007).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으로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장애아동의 문제행동,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일반아동이 학습 및 행동의 모델이 되는 점, 일반교사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능력, 장애아동이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신변처리 능력, 기초 학업능력, 학교의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는 능력, 통학 방법 및 통학시간, 장애아동의 입학으로 인한 비장애 형제자매의 학교생활,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을 보고하였다(허정연, 1998).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배치결정은 아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랜 시간과 많은 고민을 요구하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작업이다. 부모들은 새로운 학교 및 서비스에 관련된 자신의 결정이 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Losen & Losen, 1985; Hanline & Knowlton, 1988, 김미라, 2005, 재인용). 이 때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하는데 따르는 책임을 교사와 공유하길 원한다(Fowler et al., 1988; Hanline, 1988; Hanline & Halvorsen, 1989, 김미라, 2005, 재인용).

초등학교로의 취학은 해당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적응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 일반아동인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취학은 새로운 환경에서 아동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아동인 경우 더욱 세심한 고려와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가족, 아동을 보내고 받는 기관의 교사들,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조윤경 외, 2007).

따라서 학령전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가 매우 조심스럽게 조기에 계획되어야 하고, 많은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Diamond et al., 1988; Fowler et al., 1988; Hains et al., 1988; Hanline & Knowlton, 1988; Turnbull & Turnbull, 1990 재인용).

2.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1) 의무취학과 취학유예의 체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하면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7). 이 때 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개정, 2008. 2. 29). 이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이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신설, 2008. 5. 27).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개정, 2008. 5. 27), 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7). 취학 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개정, 2008. 5. 27).

취학아동의 명부 작성이 되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 기일과 통학 구역을 결정하고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기일 등의 통보를 해야 한다. 읍·면·동장은 통보를 받은 때에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학할 학교를 변경하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 2. 27).

초·중등 교육법 제 14조 1항에 의하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07. 12. 14). 또한 2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동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항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

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4항에는 취학의무와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현황

200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08학년도 시·도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67,319명으로 발육부진으로 인한 유예 42,802명, 질병으로 인한 유예 6,074명, 그리고 장애로 인한 유예는 4,689명, 기타 13,754명으로 장애로 인한 지역별 유예자는 서울 1,698명, 부산 346명, 대구 281명, 대전 83명, 광주 180명, 전남 199명을 포함 16개 시·도에서 총 4,689명으로 취학유예자의 7.0%에 이른다.

홍혜정(2005)의 연구에서 취학유예 사유로 아동의 질병이나 기타 중요한 이유가 아닌 언어·인지 등 발달의 문제보다 주도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업이 뒤쳐질까봐, 체격이 또래보다 작거나 약해서라는 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으로써 유예기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헌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입학 을 미룬 아동이 전체 취학유예 아동 중 약 20% 차지한다는 연구(장애인교육권연대, 2005) 보고가 있었다. 2005년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3,87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학유예 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등학교에서 올해 입학 을 미룬 학생은 4만2285명이라고 한다. 이 중 장애로 인해 학교 입학 을 미룬 아동은 2만4751명(58.53%)을 기록한 발육부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822명(18.5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질병이 5,086명(12.0%)으로 주요한 취학유예 이유로 조사됐다.

취학이 늦춰진 장애아동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습장애가 2,246명(28.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서장애 1,529명(19.6%), 정인지체장애 1,425명(18.3%), 언

어장애 1,182명(15.2%), 건강장애 747명(9.6%), 지체부자유 449명(5.8%), 청각장애 143명(1.8%), 시각장애 77명(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6세가 6,034명(77.38%), 만 7세가 1,276명(16.36%), 만 8세가 488명(6.2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취학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이 만 6세의 경우 18.6%에 불과하지만 만 7세는 26.6%, 만 8세 33.1%, 만 8세 이상은 75.1%로 증가해 나이가 들수록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발육부진 등으로 입학을 늦춘 어린이는 1~2년 내에 입학하는 반면 장애아동은 2~3년 이상 입학할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비율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17.21%)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19.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유경, 2005).

3.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관련 연구

이금진과 박승희(2005)는 2005년 3월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결정하고 2006년 3월에 입학할 앞둔 장애아동의 어머니 1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면접법을 통하여 아동의 취학유예를 결정하게 된 어려움이나 배경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과는 첫째, 취학을 앞두고 어머니들이 느끼는 어려움으로 아동들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 어머니 자신들이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에 관해서 스스로 느끼는 어려움과 가족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취학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및 체계적인 지원의 부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취학유예를 하고 있었다. 둘째, 그 취학유예의 배경으로는 어머니들이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할 앞두고 느끼는 취학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학교를 선택할 때의 어려움으로써 통합교육에 대한 기대가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에게 주는 부담감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교육기관에서의 양질의 적응프로그램, 실용적인 프로그램과 아동들의 재능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원하였으며, 국가나 정부 차원의 지원부재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지원 및 장애아동의 취학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지역사회와 연관되어 구청별로 제공되는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수교사나 보조교사, 모니터교사의 지원확대와 정부의 지원이 사교육기관에도 지원이 되어 연계성이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기대하고 있었으며,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장애아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로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장애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였다.

정유경(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과령입학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학교적응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학교규칙에서 높은 만족을 나타냈으나,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습준비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과령입학 발달장애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학년, 취학유예기간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만족도에서 아동 성별에 따른 부모 만족도는 여아를 둔 부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 학년에 따른 부모 만족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만족도와 하위영역에서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발달장애 아동들이 가진 지적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아동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도 같이 낮아지는 것이라 보여 진다. 아동의 취학유예기간에 따른 부모 만족도는 전체적인 만족도와 하위영역 모두에서 1년 유예한 아동의 부모 만족도가 2년 이상 유예한 아동의 부모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학년에 따른 만족도와 유사한 것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면 사회성 부족 또는 학업의 지연 등으로 일반학교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유예를 시키지만, 유예기간에 따른 학교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취학유예가 교육적인 면에서 적절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승현(2005)의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 조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대부분이 일반초등학교 통합학급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전 단계에서의 통합교육의 영향으로 통합 환경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부모와 교사의 요구가 공통적이었다. 이는 통합교육의 경험이 길어질수록, 장애유아부모와 교사의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등 전환에 대한 영역별 요구를 살펴보면, 가족-학교 연계성에 있어 어린이집의 학습활동의 가족참여에 관한 요구에서 교사의 요구가 부모의 요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동-학교 연계성에 관한 질문에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과의 연계성에 대해 교사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매우 그렇다'에 치중하였으며, 또래 연계성에 있어서 다양한 또래집단의 경험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계성에 있어서는 전환프로그램 계획시 사회의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는 영역별로 큰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높은 요구를 보이는 데 비해, 부모는 아동-학교 연계성, 또래 연계성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장애자녀를 초등학교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새롭게 만나게 될 학교와 또래에 대해 긴장하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가 강함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유아를 둔 부모와 담당교사는 전환에 대한 인식과 함께 전환 시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계획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사는 장애유아의 전환시기의 계획을 위한 인식과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이수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장애전담어린이집 10개 기관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문의하여 2008년 3월 광주광역시에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된 6곳과 특수학교 5곳 중 담임교사로부터 취학유예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4곳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관의 취학유예의 경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85.7%인 78부가 회수되어 연구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 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응답자	어머니	72	92.3	
	아버지	6	7.7	
	합계	78	100.0	
부모의 연령	부	20대	0	0.0
		30대	34	43.6
		40대	38	48.7
		50대	6	7.7
	합계		78	100.0
	모	20대	2	2.6
		30대	51	65.4
		40대	24	30.7
		50대	1	1.3
	합계		78	100.0

〈표 III-1〉 (계속됨)

구분		빈도(명)	비율(%)	
부모의 학력	부	고졸이하	27	34.6
		전문대졸이상	51	65.4
	합계		78	100.0
	모	고졸이하	30	38.5
		전문대졸이상	48	61.5
	합계		78	100.0
가구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6	33.3
	200~300만원		23	29.5
	300만원 이상		29	37.2
	합계		78	100.0
부모의 직업여부	부	전업가사	1	1.3
		취업	77	98.7
	합계		78	100.0
	모	전업가사	56	71.8
		취업	22	28.2
	합계		78	100.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학력, 소득, 직업여부로 구분하였는데,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30대 34명(43.6%), 40대 38명(48.7%), 50대 6명(7.7%), 어머니의 경우 20대 2명(2.6%), 30대 51명(65.4%), 40대 24명(30.7%), 50대 1명(1.37%)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하 27명(34.6%), 전문대졸 이상 51명(65.4%),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하 30명(38.5%), 전문대졸 이상 48명(61.5%)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200만원 미만 26명(33.3%), 200~300만원 23명(29.5%), 300만원 이상 29명(37.2%), 직업여부는 아버지의 경우 전업가사 1명(1.3%), 취업 77명(98.7%), 어머니의 경우 전업가사 56명(71.8%), 취업 22명(28.2%)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와 취학유예의 결정과정, 그리고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정유경(2005)과 윤순단(2005) 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특수교육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교사 5명, 장애아동의 부모 5명과의 문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설문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장애아동의 자녀를 두고, 1회 이상 취학유예 경험이 있는 학부모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수정을 거친 후 특수교육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내용을 검증받아 최종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30 문항이며, 세 영역으로 각각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취학유예 결정과정,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설문지 구성 및 내용은 <표 III-2>에 제시하였다.

<표 III-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기초정보	· 취학유예 아동과 응답자와의 관계	1-5	5
	· 부모의 연령 · 학력 · 직업		
	· 가구의 소득		
취학유예 실태	· 취학유예 아동의 성별	6-14	9
	· 취학유예 아동의 연령		
	· 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취학유예 아동의 주된 교육기관		
	· 취학유예 아동이 받고 있는 치료서비스		
	·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 취학유예 횟수		
	· 취학유예 신청시 제출 서류		
· 아동의 취학계획 (최대 유예 가능한 시기까지 유예하고자 하는 이유)			

〈표 III-2〉 (계속됨)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취학유예 결정과정	· 취학유예의 이유	15-23	9
	· 취학유예 결정에 큰 역할을 한 사람		
	· 취학유예 결정 시기		
	· 취학유예 상담자		
	· 취학유예 결정에 대한 상담자 조언의 도움 정도		
	· 취학유예 결정시 어려운 점		
	·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적응정도		
	·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인식	·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	24-30	7
	·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에 대한 이유		
	· 취학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		
	·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		
	·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 여부 (전문상담기관의 담당 업무)		
	·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		
	· 취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교육기관		
계			30

3. 연구절차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진담어린이집 10개 기관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문의하여 2008년 3월 광주광역시에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된 6곳과 특수학교 5곳 중 담임교사로부터 취학유예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

인 된 4곳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관의 취학유예의 경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 91명을 대상으로 2008년 5월 19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5월 19일 기관방문을 통해 91부를 배부하고, 5월 26일 전화통화 실시로 설문지 회수를 독려하였으며, 5월 28일부터 기관을 재방문하여 78부(85.7%)를 회수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회수된 설문지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장애 아동의 취학유예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단일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복수응답을 허용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와 반응 백분율, 그리고 케이스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취학유예 결정과정과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대해서는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의 유무에 따라 교차분석(Pearson χ^2)을 실시하여 분포를 알아보았다. 모든 자료의 처리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1) 취학유예 아동의 성별

취학유예 아동의 성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가 44명(56.4%), 여자는 34명(43.6%)으로 나타났다.

<표 IV-1> 취학유예 아동의 성별

구분	빈도	백분율(%)
남	44	56.4
여	34	43.6
합계	78	100.0

(2) 취학유예 아동의 현재 연령

취학유예 아동의 현재 연령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만 6세라는 응답이 46명(59.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만 7세 21명(26.9%), 만 8세 4명(5.1%), 만 10세 4명(5.1%), 만 9세, 만 11세, 만 12세는 각각 1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 취학유예 아동의 현재 연령

구분	빈도	백분율(%)
만 6세	46	59.0
만 7세	21	26.9
만 8세	4	5.1
만 9세	1	1.3
만 10세	4	5.1
만 11세	1	1.3
만 12세	1	1.3
합계	78	100.0

(3) 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적장애가 30명(38.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25명(32.1%), 자폐성장애 23명(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1급이 51명(65.4%)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급 20명(25.6%), 3급 7명(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장애유형	장애등급			합계(%)
	1급 빈도(%)	2급 빈도(%)	3급 빈도(%)	
지적장애	17	9	4	30(38.5)
	56.7	30.0	13.3	100.0
자폐성장애	13	8	2	23(29.5)
	56.5	34.8	8.7	100.0
지체장애	21	3	1	25(32.1)
	84.0	12.0	4.0	100.0
합계	51	20	7	78
	65.4	25.6	9.0	100.0

(4) 취학유예 아동의 주된 교육기관

취학유예 아동의 주된 교육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이라는 응답이 68명(87.4%)으로 매우 많았으며, 장애아유치원은 10명(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취학유예 아동의 주된 교육기관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아유치원	10	12.8
장애전담어린이집	68	87.2
합계	78	100.0

(5) 취학유예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

취학유예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5> 취학유예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

내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언어치료	62	31.8	84.9
물리치료	32	16.4	43.8
작업치료	21	10.8	28.8
심리치료	3	1.5	4.1
감각통합	33	16.9	45.2
미술치료	15	7.7	20.5
음악치료	9	4.6	12.3
원예치료	4	2.1	5.5
학습지원	10	5.1	13.7
기타	6	3.1	8.7
합계	195*	100	267.5

* 복수 응답 결과임

취학유예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에 대해 언어치료가 62명(케이스 백분율 8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각통합 33명(케이스 백분율 45.2%), 물리치료 32명(케이스 백분율 43.8%), 작업치료 21명(케이스 백분율 28.8%), 미술치료 15명(케이스 백분율 20.5%), 학습지원 10명(케이스 백분율 13.7%), 음악치료 9명(케이스 백분율 12.3%), 기타 6명(케이스 백분율 8.7%), 원예치료 4명(케이스 백분율 5.5%), 심리치료 3명(케이스 백분율 4.1%) 순으로 나타났다.

(6)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된 경위

취학유예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6>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된 경위

구분	빈도	반응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가족	5	5.6	6.4
장애아동부모	37	41.6	47.4
TV나 인터넷	6	6.7	7.7
책, 잡지	0	0	0
이웃	6	6.7	7.7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2	24.7	28.2
초등학교 교사	3	3.4	3.8
기타	10	11.2	12.8
합계	89*	100.0	114.1

* 복수 응답 결과임

장애아동부모를 통해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7명(케이스 백분율 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2명(케이스 백분율 28.2%), 기타 10명(케이스 백분율 12.8%), TV나 인터넷과 이웃이라는 응답이 각각 6명(케이스 백분율 7.7%), 가족 5명(케이스 백분율 6.4%), 초등학교 교사 3명(케이스 백분율 3.8%) 순으로 나타났다.

(7) 취학유예 횟수

현재까지 취학유예를 몇 차례나 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7> 취학유예 횟수

구분	빈도	백분율(%)
1회	50	64.1
2회	18	23.1
3회	5	6.4
4회	3	3.8
5회 이상	2	2.6
합계	78	100.0

취학유예를 1회 하였다는 응답이 50명(64.1%)으로 가장 높았으며, 2회 18명(23.1%), 3회 5명(6.4%), 4회 3명(3.8%), 5회 이상 2명(2.6%) 순으로 나타났다.

(8) 취학유예 신청시 제출한 서류

취학유예 신청시 취학유예 신청서 외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8> 취학유예 신청서의 제출한 서류

구분	빈도	반응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없다	8	8.9	10.3
장애등록카드	43	47.8	55.1
진단서	18	20.0	23.1
의사의 소견서	16	17.8	20.5
기타	5	5.6	6.4
합계	90*	100.0	115.4

* 복수 응답 결과임

취학유예 신청 시 신청서의 제출한 서류는 장애등록카드 사본이라는 응답이 43명(케이스 백분율 55.1%)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진단서 18명(케이스 백분율 23.1%), 의사의 소견서 16명(케이스 백분율 20.5%), 제출서류가 없다 8명(케이스 백분율 10.3%), 기타 5명(케이스 백분율 6.4%) 순으로 응답하였다.

(9) 아동의 취학계획

아동의 취학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9> 아동의 취학계획

구분	빈도(%)			
1년 후	52(66.7)			
2년 후	5 (6.4)			
3년 후	1 (1.3)			
최대한 가능한 시기까지	13(16.7)	이유	빈도	백분율(%)
		아동발달의 문제	11	84.6
		적절한 교육기관의 미설치	2	15.4
		합계	13	100.0
기타	7 (9.0)			
합계	78(100.0)			

앞으로 1년 후 취학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2명(66.7%)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최대한 가능한 시기까지 13명(16.7%), 기타 7명(9.0%), 2년 후 5명(6.4%), 3년 후 1명(1.3%) 순으로 응답하였고, 최대한 유예가 가능한 시기까지에 표시한 이유는 11명(84.6%)의 부모가 아동발달의 문제로 응답하였고, 적절한 교육기관 미설치도 2명(15.4%)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과정

(1) 취학유예 이유

취학유예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0> 취학유예 이유

내용	빈도(명)	반응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아동의 등·하교 이동의 문제	18	7.7	23.1
신체발달의 지연	40	17.1	51.3
인지발달의 지연	56	23.9	71.8
사회성발달의 지연	28	12.0	35.9
질병 및 약물복용	4	1.7	5.1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움	49	20.9	62.8
경제적인 이유	1	0.4	1.3
교육기간의 연장을 위해	11	4.7	14.1
해당지역에 원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6	2.6	7.7
치료지원이 없어서	8	3.4	10.3
보육기관 이용할 때 보다 아동을 돌봐야 할 시간이 많아짐에 따른 양육부담	10	4.3	12.8
기타	3	1.3	3.8
합계	234*	100	300.0

* 복수 응답 결과 임

취학유예 이유에 대해 56명(케이스 백분율 71.8%)의 부모가 아동의 인지발달 지연을 이유로 들었으며, 다음으로는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9명(케이스 백분율 62.8%), 아동의 신체발달 지연 40명(케이스 백분율 51.3%), 아동의 사회성발달의 지연 28명(케이스 백분율 35.9%), 아동의 등·하교 이동의 문제 18명(케이스 백분율 23.1%), 교육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11명(케이스 백분율 14.1%), 아동을 돌봐야 할 시간이 많아짐에 따른 양육부담 10명(케이스 백분율 12.8%), 치료지원이 없어서 8명(케이스 백분율 10.3%), 해당지역에 원하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6명(케이스 백분율 7.7%), 질병 및 약물복용 4명(케이스 백분율 5.1%), 기타 3명(케

이스 백분율 3.8%), 경제적 이유 1명(케이스 백분율 1.3%) 순으로 응답하였다.

(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변수	구분	어머니 n(%)	아버지 n(%)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 n(%)	자유도 (df)	X ²
부모연령	40미만	45(86.5)	7(13.5)	0(0)	2	4.393
	40이상	18(69.2)	7(26.9)	1(3.8)		
부모학력	고졸이하	22(73.3)	8(26.7)	0(0)	2	3.023
	전문대졸이상	41(85.4)	6(12.5)	1(2.1)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18(69.2)	7(26.9)	1(3.8)	4	5.031
	200-300미만	21(91.3)	2(8.7)	0(0)		
	300만원이상	24(82.8)	5(17.2)	0(0)		
부모직업	전업가사	48(88.9)	5(9.3)	1(1.9)	2	9.260*
	취업자	15(62.5)	9(37.5)	0(0)		
전체		63(80.8)	14(17.9)	1(1.3)		

* p < .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취학유예 결정에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는 응답이 63명(80.8%)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 14명(17.9%),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 1명(1.3%) 순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로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어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취업자인 경우 보다 전업가사인 경우에 어머니의 역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기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기

변수	구분	만 4세 이전 N(%)	만 4세 때 N(%)	만 5세 때 N(%)	만 6세 때 N(%)	입학 바로 전 N(%)	자유도 (<i>df</i>)	χ^2
부모연령	40미만	2(3.8)	3(5.8)	7(13.5)	29(55.8)	11(21.2)	4	2.582
	40이상	3(11.5)	1(3.8)	2(7.7)	13(50.0)	7(26.9)		
부모학력	고졸이하	2(6.7)	1(3.3)	1(3.3)	20(66.7)	6(20.0)	4	4.844
	전문대졸이상	3(6.3)	3(6.3)	8(16.7)	22(45.8)	12(25.0)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1(3.8)	1(3.8)	1(3.8)	12(46.2)	11(42.3)	8	15.455
	200-300만원	1(4.3)	2(8.7)	6(26.1)	11(47.8)	3(13.0)		
	300만원이상	3(10.3)	1(3.4)	2(6.9)	19(65.5)	4(13.8)		
부모직업	전업가사	3(5.6)	2(3.7)	8(14.8)	29(53.7)	12(22.2)	4	2.583
	취업자	2(8.3)	2(8.3)	1(4.2)	13(54.2)	6(25.0)		
전체		5(6.4)	4(5.1)	9(11.5)	42(53.8)	19(23.1)		

전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동이 만 6세 때 취학유예 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42명 (53.8%)으로 가장 높았으며, 입학하기 바로 전(2~3개월 이내)은 19명(23.1%), 만 5세 때 9명(11.5%), 만 4세 이전 5명(6.4%), 만 4세 때 4명(5.1%)이 취학유예결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4)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상담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 유예 상담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상담자

변수	구분	가족 n(%)	이용기관 원장, 교사 n(%)	이용 병원 의사 n(%)	기타 n(%)	자유도 (df)	X ²
부모연령	40미만	26(50.0)	24(46.2)	0(0)	2(3.8)	3	2.057
	40이상	13(50.0)	11(42.3)	1(3.8)	1(3.8)		
부모학력	고졸이하	19(63.3)	10(33.3)	0(0)	1(3.3)	3	3.838
	전문대졸이상	20(41.7)	25(52.1)	1(2.1)	2(4.2)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14(53.8)	11(42.3)	0(0)	1(3.8)	6	4.658
	200-300미만	10(43.5)	12(52.2)	1(4.3)	0(0)		
	300만원이상	15(51.7)	12(41.4)	0(0)	2(6.9)		
부모직업	전업가사	30(55.6)	22(40.7)	1(1.9)	1(1.9)	3	4.010
	취업자	9(37.5)	13(54.2)	0(0)	2(8.3)		
전체		39(50.0)	35(44.9)	1(1.3)	3(3.8)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상담을 주로 가족과 한다는 응답이 39명(50.0%)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원장과 교사와 상담한다는 응답이 35명(44.9%), 기타 3명(3.8%), 병원 의사 1명(1.3%)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5)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에 대한 상담 조언의 도움 정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담자의 조언이 취학유예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4>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에 대한 상담 조언의 도움 정도

변수	구분	매우도움됨 n(%)	조금도움됨 n(%)	보통 n(%)	도움되지않음 n(%)	자유도 (df)	X ²
부모연령	40미만	16(30.8)	21(40.4)	13(25.0)	2(3.8)	3	1.671
	40이상	7(26.9)	10(38.5)	9(34.6)	0(.0)		
부모학력	고졸이하	6(20.0)	9(30.0)	14(46.7)	1(3.3)	3	8.656*
	전문대졸이상	17(35.4)	22(45.8)	8(16.7)	1(2.1)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5(19.2)	11(42.3)	9(34.6)	1(3.8)	6	4.191
	200-300미만	9(39.1)	7(30.4)	6(26.1)	1(4.3)		
	300만원이상	9(31.0)	13(44.8)	7(24.1)	0(.0)		
부모직업	전업가사	16(29.6)	19(35.2)	17(31.5)	2(3.7)	3	2.476
	취업자	7(29.2)	12(50.0)	5(20.8)	0(.0)		
전체		23(29.5)	31(39.7)	22(28.2)	2(2.6)		

* p < .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결정시 상담자의 조언이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1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도움 되었다 23명(29.5%), 보통이다 22명(28.2%)으로 상담자의 조언이 취학유예를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 분석 결과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보통이다 14명(46.7%), 조금 도움이 되었다 9명(30.0%), 매우 도움 되었다 6명(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 22명(45.8%), 매우 도움이 되었다 17명(35.4%), 보통이다 8명(16.7%) 순으로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부모들이 고졸 이하인 부모들보다 상담자의 조언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연령,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 어려운 점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 어려운 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5>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시 어려운 점

변수	구분	없었다 n(%)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n(%)	교육기관 선택 n(%)	결정위한 정보제공 n(%)	기타 n(%)	자유도 (df)	X ²
부모연령	40미만	8(15.4)	21(40.4)	16(30.8)	5(9.6)	2(3.8)	4	1.784
	40이상	6(23.1)	9(34.6)	8(30.8)	3(11.5)	0(0.0)		
부모학력	고졸이하	5(16.7)	14(46.7)	5(16.7)	6(20.0)	0(0.0)	4	9.812*
	전문대졸이상	9(18.8)	16(33.3)	19(39.6)	2(4.2)	2(4.2)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5(19.2)	11(42.3)	7(26.9)	3(11.5)	0(0.0)	8	2.612
	200-300미만	4(17.4)	10(43.5)	6(26.1)	2(8.7)	1(4.3)		
	300만원이상	5(17.2)	9(31.0)	11(37.9)	3(10.3)	1(3.4)		
부모직업	전업가사	8(14.8)	24(44.4)	14(25.9)	6(11.1)	2(3.7)	4	4.946
	취업자	6(25.0)	6(25.0)	10(41.7)	2(8.3)	0(0.0)		
전체		14(17.9)	30(38.5)	24(30.8)	8(10.3)	2(2.6)		

* p < .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30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이 24명(30.8%),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14명(17.9%), 취학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8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로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14명(46.7%)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취학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이 6명(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이 19명(39.6%),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16명(33.3%) 순으로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연령,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적응 정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적응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6>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적응 정도

변수	구분	매우 잘 적응 n(%)	잘 적응 n(%)	보통 n(%)	자유도 (df)	χ^2
부모연령	40미만	26(50.0)	21(40.4)	5(9.6)	2	.930
	40이상	10(38.5)	13(50.0)	3(11.5)		
부모학력	고졸이하	14(46.7)	14(46.7)	2(6.7)	2	.721
	전문대졸이상	22(45.8)	20(41.7)	6(12.5)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11(42.3)	14(53.8)	1(3.8)	4	3.883
	200-300미만	13(56.5)	7(30.4)	3(13.0)		
	300만원이상	12(41.4)	13(44.8)	4(13.8)		
부모직업	전업가사	25(46.3)	24(44.4)	5(9.3)	2	.200
	취업자	11(45.8)	10(41.7)	3(12.5)		
전체		36(46.2)	34(43.6)	8(10.3)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아동이 교육기관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명(46.2%), 잘 적응하고 있다 34명(43.6%), 보통이다 8명(10.3%)으로 거의 모든 부모가 아동이 현재 이용 중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8)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7>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재 이용 중인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변수	구분	매우 만족 n(%)	조금 만족 n(%)	보통 n(%)	자유도 (df)	χ^2
부모연령	40미만	35(67.5)	11(21.2)	6(11.5)	2	1.725
	40이상	15(57.7)	9(34.6)	2(7.7)		
부모학력	고졸이하	22(73.3)	6(20.0)	2(6.7)	2	1.866
	전문대졸이상	28(58.3)	14(29.2)	6(12.5)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15(57.7)	10(38.5)	1(3.8)	4	4.407
	200-300미만	16(69.6)	4(17.4)	3(13.0)		
	300만원이상	19(65.5)	6(20.7)	4(13.8)		
부모직업	전업가사	36(66.7)	12(22.2)	6(11.1)	2	1.105
	취업자	14(58.3)	8(33.3)	2(8.3)		
전체		50(64.1)	20(25.6)	8(10.3)		

전체적인 결과는 현재 아동이 이용 중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부모가 50명(6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만족하고 있다 20명(25.6%), 보통이다 8명(10.3%) 순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9)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8>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구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n(%)	종 일 프로그램의 시간 연장 n(%)	다양한 치료 서비스 제공 n(%)	교사의 전문성 n(%)	기타 n(%)	자유도 (df)	χ^2
부모연령	40미만	33(63.5)	1(1.9)	14(26.9)	2(3.8)	2(3.8)	4	2.364
	40이상	14(53.8)	1(3.8)	9(34.6)	2(7.7)	0(0)		
부모학력	고졸이하	16(63.3)	0(0)	8(26.7)	2(6.7)	1(3.3)	4	1.796
	전문대졸이상	28(58.3)	2(4.2)	15(31.3)	2(4.2)	1(2.1)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14(53.8)	1(3.8)	8(30.8)	2(7.7)	1(3.8)	8	5.191
	200-300미만	13(56.5)	0(0)	8(34.8)	2(8.7)	0(0)		
	300만원이상	20(69.0)	1(3.4)	7(24.1)	0(0)	1(3.4)		
부모직업	전업가사	34(63.0)	0(0)	15(27.8)	4(7.4)	1(1.9)	4	7.012
	취업자	13(54.2)	2(8.3)	8(33.3)	0(0)	1(4.2)		
전체		47(60.3)	2(2.6)	23(29.5)	4(5.1)	2(2.6)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47명(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치료서비스 제공 23명(29.5%), 교사의 전문성 4명(5.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

(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9>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연령 제한 필요 여부

변수	구분	예 n(%)	아니오 n(%)	자유도 (df)	χ^2
부모연령	40미만	7(13.5)	45(86.5)	1	.057
	40이상	3(11.5)	23(88.5)		
부모학력	고졸이하	3(10.0)	27(90.0)	1	.347
	전문대졸이상	7(14.6)	41(85.4)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4(15.4)	22(84.6)	2	.313
	200-300미만	3(13.0)	20(87.0)		
	300만원이상	3(10.3)	26(89.7)		
부모직업	전업가사	7(13.0)	47(87.0)	1	.003
	취업자	3(12.5)	21(87.5)		
전체		10(12.8)	68(87.2)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8명(87.2%)으로 필요하다는 응답 10명(12.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2) 취학연령 제한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이유

장애아동에게 취학연령 제한의 필요 여부에 대해 자유 기술한 답변을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한 분석 결과는 <표 IV-20>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20> 취학연령 제한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이유

구분		이유	빈도	백분율 (%)
예	또래아동들과의 부적응 우려	- 아동 교육에 대한 무관심 염려 - 연령에 따른 신체적 성장	2	5.7
아니오	장애아동의 개별적 차이	- 아동의 특성과 발달정도에 따른 취학지도 필요 - 아동의 장애정도와 그에 따른 준비기간의 차이 - 생활연령과 전반적 발달의 차이	15	42.9
	발달의 지연	- 학습인지능력과 적응능력에 있어 어려움을 보임 - 장애아동의 인지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지연	4	11.4
	부모의 판단에 의한 취학 필요	-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시기 및 치료 병행 여부 등 부모의 자율적인 판단 필요	4	11.4
	현재수준에 맞는 교육 필요	-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인 기준에 따른 교육 제공 필요 - 생활연령보다 정신연령에 중점을 둔 교육 필요	8	22.2
	적응의 어려움	- 아동의 현재 수준을 고려한 진학 및 적응단계 필요	2	5.7
합계			35	100.0

취학연령 제한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이유로 장애아동의 개별적 차이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5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재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명(22.2%)이었으며, 아동의 발달 지연 때문에 4명(11.4%), 부모의 판단에 의한 취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4명(11.4%)으로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타난 반면, 또래아동들과의 부적응과 취학시 적응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다 2명(5.7%)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 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21>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 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변수	구분	신변 자립 n(%)	학습 준비도 n(%)	건강 n(%)	사회성 n(%)	기타 n(%)	자유도 (df)	χ^2
부모연령	40미만	30(57.7)	10(19.2)	4(7.7)	7(13.5)	1(1.9)	4	.875
	40이상	15(57.7)	6(23.1)	2(7.7)	2(7.7)	1(3.8)		
부모학력	고졸이하	16(53.3)	7(23.3)	2(6.7)	3(10.0)	2(6.7)	4	3.716
	전문대졸이상	29(60.4)	9(18.8)	4(8.3)	6(12.5)	0(.0)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16(61.5)	5(19.2)	1(3.8)	2(7.7)	2(7.7)	8	5.444
	200-300미만	13(56.5)	5(21.7)	2(8.7)	3(13.0)	0(.0)		
	300만원이상	16(55.2)	6(20.7)	3(10.3)	4(13.8)	0(.0)		
부모직업	전업가사	34(63.0)	9(16.7)	4(7.4)	6(11.1)	1(1.9)	4	2.504
	취업자	11(45.8)	7(29.2)	2(8.3)	3(12.5)	1(4.2)		
전체		45(57.7)	16(20.5)	6(7.7)	9(11.5)	2(2.6)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취학전 아동에게 신변자립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45명 (57.7%)으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습준비도를 16명(20.5%), 사회성 9명 (11.5%), 건강 6명(7.7%), 기타 2명(2.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 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4)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2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

변수	구분	신변자립 n(%)	학습·인지 n(%)	건강 n(%)	사회성 n(%)	기타 n(%)	자유도 (df)	X ²
부모연령	40미만	31(59.6)	15(28.8)	2(3.8)	3(5.8)	1(1.9)	4	.633
	40이상	15(57.7)	8(30.8)	1(3.8)	2(7.7)	0(0)		
부모학력	고졸이하	16(53.3)	10(33.3)	2(6.7)	1(3.3)	1(3.3)	4	3.836
	전문대졸이상	30(62.5)	13(27.1)	1(2.1)	4(8.3)	0(0)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16(61.5)	7(26.9)	1(3.8)	1(3.8)	1(3.8)	8	2.633
	200-300미만	13(56.5)	7(30.4)	1(4.3)	2(8.7)	0(0)		
	300만원이상	17(58.6)	9(31.0)	1(3.4)	2(6.9)	0(0)		
부모직업	전업가사	33(61.1)	15(27.8)	2(3.7)	3(5.6)	1(1.9)	4	.963
	취업자	13(54.2)	8(33.3)	1(4.2)	2(8.3)	0(0)		
전체		46(59.0)	23(29.5)	3(3.8)	5(6.4)	1(1.3)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기간에 아동에게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은 신변자립이라는 응답이 45명(59.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3명(29.5%)의 부모가 학습, 인지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여, 부모들은 취학전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5명(6.4%), 건강 3명(3.8%), 기타 1명(1.3%)으로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5)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 여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2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 여부

변수	구분	매우 그렇다 n(%)	조금 그렇다 n(%)	보통이다 n(%)	필요하지 않다 n(%)	자유도 (df)	χ^2
부모연령	40미만	30(57.7)	21(40.4)	1(1.9)	0(0)	3	.109
	40이상	9(34.6)	14(53.8)	2(7.7)	1(3.8)		
부모학력	고졸이하	15(50.0)	11(36.7)	3(10.0)	1(3.3)	3	.068
	전문대졸이상	24(50.0)	24(50.0)	0(0)	0(0)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9(34.6)	14(53.8)	2(7.7)	1(3.8)	6	.319
	200-300만원	12(52.2)	10(43.5)	1(4.3)	0(0)		
	300만원이상	18(62.1)	11(37.9)	0(0)	0(0)		
부모직업	전업가사	26(48.1)	25(46.3)	2(3.7)	1(1.9)	3	.884
	취업자	13(54.2)	10(41.7)	1(4.2)	0(0)		
전체		39(50.0)	35(44.9)	3(3.8)	1(1.3)		

전체적인 결과는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9명 (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금 그렇다 35명(44.9%), 보통이다 3명 (3.8%), 필요하지 않다 1명(1.3%)으로 대다수의 부모가 전문상담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6)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상담기관의 담당 업무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상담기관에서 담당해주기 바라는 업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24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24 >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상담기관의 담당 업무

변수	구분	아동의 전반적 평가 n(%)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 n(%)	정보 제공 n(%)	치료 서비스의 연계 n(%)	자유도 (df)	X ²
부모연령	40미만	22(43.1)	18(35.3)	7(13.7)	4(7.8)	3	8.881*
	40이상	5(21.7)	14(60.9)	0(0)	4(17.4)		
부모학력	고졸이하	12(46.2)	9(34.6)	2(7.7)	3(11.5)	3	1.869
	전문대졸이상	15(31.3)	23(47.9)	5(10.4)	5(10.4)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10(43.5)	8(34.8)	3(13.0)	2(8.7)	6	2.263
	200-300미만	7(31.8)	11(50.0)	1(4.5)	3(13.6)		
	300만원이상	10(34.5)	13(4.8)	3(10.3)	3(10.3)		
부모직업	전업가사	22(43.1)	21(41.2)	3(5.9)	5(9.8)	3	4.525
	취업자	5(21.7)	11(47.8)	4(17.4)	3(13.0)		
전체		27(36.5)	32(43.2)	7(9.5)	8(10.8)		

* p < .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상담기관에서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 업무를 담당해주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32명(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를 담당해주기를 바라는 부모가 27명(36.5%),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서비스의 연계 8명(10.8%), 취학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7명(9.5%) 순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로는 부모연령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연령이 40세 미만인 경우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 22명(43.1%),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 18명(35.3%)이 담당해주기를 바란다고 나타났고, 40세 이상의 부모들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이 14명(60.9%)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 자유 기술한 답변을 유사한 내용으로 분류한 분석 결과는 <표 IV-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25>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

구분		이유	빈도	백분율 (%)
만족스러운 점	간단한 절차	- 장애등록카드 사본만 제출 - 의사의 진단서 없이 복지카드로 대체 가능 - 부모의 유예 신청서만으로도 유예가 가능	7	25.0
	취학유예에 대한 호전된 인식	- 일반학교 방문시 취학유예에 대한 업무와 담당교사의 인식이 좋아짐	1	3.6
어려운 점	학교의 적절한 준비 미흡과 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부족	- 부모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상담이 절실함 - 전문가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취학 결정 필요	5	17.9
	학교의 무관심, 비호의적 태도	- 학교장의 불편한 시선과 서류 접수시 불편한 절차 - 유예 신청 서류나 신청기간 공고에 있어 미흡 - 담당교사의 비호의적 태도에 불쾌함을 느낌	5	17.9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	- 학교 재 방문 등의 번거로움 - 동사무소에서 병원, 병원에서 다시 동사무소, 그리고 학교 방문 등 번거로움 -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	3	10.7
	행정적 미흡	- 매번 장애임을 증명하는 같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 취학통지서에 나온 해당학교의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의 정보 미흡	4	14.3
	교육기관의 미흡	- 장애아동에 관한 취학교육기관의 정보 부족 -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부족과 치료 지원 부족	3	10.7
합계			28	100.0

취학유예 신청시 만족스러운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 간단한 절차 7명(25.0%)과, 학교 측의 취학유예에 대한 좋아진 인식 1명(3.6%)이 만족스러운 점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의 적절한 준비 미흡과 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부족하다 5명(17.9%), 학교의 무관심, 비호의적인 태도 5명(17.9%), 행정적인 미흡 4명(14.3%),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와 교육기관의 부족 등이 각각 3명(10.3%)으로 취학유예 신청시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8)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교육기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I-26>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교육기관

변수	구분	일반학교 일반학급 n(%)	일반학교 특수학급 n(%)	특수학교 n(%)	기타 n(%)	자유도 (df)	χ^2
부모연령	40미만	16(30.8)	16(30.8)	16(30.8)	4(7.7)	3	8.708*
	40이상	2(7.7)	10(38.5)	14(53.8)	0(0)		
부모학력	고졸이하	5(16.7)	11(36.7)	12(40.0)	2(6.7)	3	1.286
	전문대졸이상	13(27.1)	15(31.3)	18(37.5)	2(4.2)		
부모수입	200만원미만	7(26.9)	8(30.8)	11(42.3)	0(0)	6	2.883
	200-300만원	4(17.4)	8(34.8)	9(39.1)	2(8.7)		
	300만원이상	7(24.1)	10(34.5)	10(34.5)	2(6.9)		
부모직업	전업가사	14(25.9)	17(31.5)	21(38.9)	2(3.7)	3	1.501
	취업자	4(16.7)	9(37.5)	9(37.5)	2(8.3)		
전체		18(23.1)	26(33.3)	30(38.5)	4(5.1)		

* $p < .05$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특수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30명(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26명(33.3%),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18명(23.1%)의 부모가 입학시키고자 희망하였다. 각 특성별로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40세 미만의 부모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모두 동일하게 16명(30.8%)의 응답을 한 반면, 40세 이상의 부모들은 특수학교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14명(5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응답이 10명(38.5%)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수입,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이 연구는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에 관해 설문조사 · 분석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를 살펴보면 취학유예 아동의 성비는 절반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고, 연령은 만 6세가 가장 많으며, 만 10세에서 만 12세 아동들도 있었다. 취학유예 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지체장애도 30%전후 포함되어 있었다. 장애등급은 대부분이 1급과 2급이었다. 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은 장애전담어린이집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종일 보육시간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다양한 치료교육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이 받는 치료서비스는 언어치료가 가장 많았고, 감각통합, 물리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개 이상의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지원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요구와 아울러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적 요구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결과는 치료교육에 관한 손영미(2008)의 연구와 같이 대부분의 보육기관이 언어치료와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업치료, 물리치료, 행동(심리)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심리운동 등 다양한 치료 서비스 제공이 치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학유예 제도를 알게 된 경위는 장애아동부모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였다. 이는 부모들의 정보 유입경로를 알 수

있으며,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취학유예 횟수는 1회와 2회를 포함하면 87%이고, 5회 유예한 경우도 2.6%로 취학연령 설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장애아동 취학유예가 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만 3세 이상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유예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취학유예 신청시 신청서의 제출한 서류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장애등록카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진단서 14명(17.9%), 의사의 소견서 9명(11.5%) 순으로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한 첨부서류 제출이 없이도 취학유예한 아동이 10.3%에 이른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볼 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05년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발표한 ‘취학유예 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에서처럼 취학유예 신청시 근거 자료로 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거의 대부분 취학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자료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미룬 아동이 전체 취학유예 아동 중 약 20% 차지한다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2005년 연구보고가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의 취학계획은 1년 후 취학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고, 유예가 가능할 때까지도 약 17%였다. 그러나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보육시설의 현장에서 취학을 앞둔 대부분의 아동들이 2년에서 3년의 취학유예는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어 1년 후의 취학계획은 자녀의 신체적 발달과 생활연령상 취학계획을 세워야하기에 응답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최대한 유예가 가능한 시기까지 유예하겠다고 한 이유는 대부분이 자녀의 발달문제를 들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기관 미설치도 약 15% 정도 나타나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있어 1~2회의 취학유예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유예결정에 있어 부모의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에게 장애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취학지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과정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이유로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신체발달 지연, 그리고 적응의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요인은 거의 없었다. 이 결과는 과령입학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유경(2005)의 연구에서 취학유예 이유로 사회성 부족과 학업의 지연, 언어발달지체, 주의 집중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점과 유사하다.

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대부분이 어머니였다. 취학유예 결정 시기는 아동이 만 6세 때와 입학하기 바로 전 2~3개월 이내가 가장 높았다. 이는 오랜 시간동안 취학에 대한 고민과 부담감을 갖고 있음에도, 자녀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모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진다. 부모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취학유예 결정은 아동의 교육적 요구와 중요한 시기의 적절한 교육 기회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부모교육 및 취학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줄 교육프로그램의 구안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학유예 상담자로는 주로 가족과 이용중인 기관의 원장과 교사였으며, 상담자의 조언은 취학유예를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부모들이 고졸 이하인 부모들보다 상담자의 조언이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운경 등의 연구(200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환경에서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관계들,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아동들을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 또한 새로운 규칙과 일과들에 적응해야하며 자녀에 대한 친숙하

고 지원적인 프로그램을 떠나 아동의 장애가 다시 확인되고 표찰이 붙여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야만 하는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관계성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가족, 아동을 보내고 받는 기관의 교사들,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학결정에 있어 어려운 점은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2008년 현재 광주지역에 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 평가 지원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선정·배치·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부모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여부와 기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그 역할 또한 부모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이용중인 교육기관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았다. 부모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종일 프로그램의 시간 연장을 가장 적게 선택하였다. 취학전 교육기관의 적응도와 만족도는 높은 반면, 학교의 취학은 유예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달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새로운 규칙과 일과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환경에서 장애가 다시 확인되고 표찰 되어야 하는 부담감, 전문가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취학전 교육기관과 취학하게 될 교육기관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협력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취학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3.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

취학연령에 대해서는 부모들 대부분이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윤순단(2005)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제안한 내용과 함께 의무교육 실시를 앞두고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한 이유로 또래아동들과의 부적응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라는 반면, 장애아동의 개별적 차이와 현재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장애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습과정과 학습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하며,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취학 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변자립을 과반수 이상이 언급하였고, 다음으로는 학습준비도, 사회성, 건강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Sullivan(1999)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성공적인 학교 경험을 위해 문해 기술, 사회적 기술, 자존감, 또래와의 관계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영역 역시 신변자립과 학습·인지영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결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부모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상담기관에서 담당해주기를 바라는 업무로는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과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서비스의 연계와 취학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다. 부모의 연령이 40세 미만인 경우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을 비슷한 빈도로 선택한 반면, 40세 이상의 부모들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을 담당해주기를 바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학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현재 운영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홍보와 함께 장애유아의 교육과 상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취학유예 신청시 간단한 절차에 만족한다고 나타났으며, 어려운 점으로는 학교의 적절한 준비 부족과 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부족, 그리고 학교의 무관심, 비호의적인 태도 등을 들고 있었다.

취학 희망 교육기관으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각각 30%정도의 부모가 선택하였고, 일반학급은 20%정도의 부모가 희망하였다. 40세 미만의 부모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모두 동일하게 30% 수준의 응답을 한 반면, 40세 이상의 부모들은 특수학교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수학급이 38%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40세 이상의 부모들 보다 40세 미만의 부모들이 자녀를 통합된 환경에 취학시키고자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와 취학유예 결정과정, 그리고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지역의 취학유예 아동의 부모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된 조사 연구이다. 조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유예의 실태에 있어 아동들은 주로 종일 보육시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다양한 치료교육 제공되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고, 평균 2개 이상의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어, 치료지원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요구와 아울러 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장애아동부모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정보 유입경로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취학연령 설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장애아동 취학유예가 보편적 현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만 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유예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있어 1~2회의 취학유예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유예결정에 있어 부모의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아동에게 장애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취학지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른 이해를 통해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취학유예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대부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이유로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신체발달 지연, 그리고 적응의 문제를 들고 있었고, 취학유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들이었다. 취학유예 결정시기는 아동이 만 6세 때와 입학하기 바로

2~3개월 전으로, 오랜 시간동안 취학에 대한 고민과 부담감을 갖고 있음에도, 자녀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모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므로 구체적인 부모교육 및 취학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줄 교육프로그램의 구안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학유예 상담은 가족과 이용중인 기관의 원장과 교사와 하고 있었으며, 취학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와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아동들은 취학전 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부모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 취학전 교육기관과 취학하게 될 교육기관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협력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취학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셋째, 취학유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대부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취학연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모가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장애아동의 개별적 차이, 현재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인 반면, 취학연령 제한이 필요한 이유로 또래아동들과의 부적응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장애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습과정과 학습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하며,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취학 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취학유예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것은 신변자립과 학습·인지부분이었다. 취학결정을 위해 대다수의 부모가 전문상담기관을 필요로 하였으며, 취학을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 선택과 취학결정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평가를 담당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취학유예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에 만족한다고 한 반면, 학교의 적절한 준비 부족, 학교의 무관심, 비호의적인 태도 등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취학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현재 운영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홍보와 함께 장애유아의 교육과 상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동의 부모와 아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의무 취학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취학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 평가 지원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선정 · 배치 ·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부모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가 요구되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미의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취학전 장애아동의 취학유예에 관한 실태와 인식을 알아보았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되었고, 장애아유치원이나,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더불어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을 포함한 폭 넓은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정일(2002).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교육기회 평등분석.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김미라(2004). 장애아동 어머니가 자녀의 초등학교 통합직전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현(2005). 장애유아의 초등 전환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 조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문(1997). 장애아동의 취학지도. 중북 · 지체부자유아교육. 30, p. 1-21.
- 서울장애인복지관(2002).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저해요인에 대한 서울지역 일반초등학교 실태.
- 석재은(1992). 장애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위한 부모들의 욕구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미(2008). 발달지체 보육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실태분석과 관련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정(2001). 초등부 특수교육 대상자 취학의무제도의 시행 현황 및 보호자 요구 분석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수옥(2005). 유아특수교육론. 학지사.
- 윤수영(1992). 자폐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단(2005). 초등학생 취학유예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점룡(1999).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개선. 국립특수교육원.
- 이금진, 박승희(2005).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결정의 배경: 어머니의 의견과 해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4(2), p. 43-74.

- 이소영(2005). 장애아동의 일반초등학교 취학에 필요한 기술의 중요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우(2000). 서울시 중구보건소 모자 보건 사업 -정신지체발달지연아동- 연구 결과보고서. 서울시 중구보건소.
- 이유훈(1995). 21세기 특수교육을 위한 장단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이진옥(2004). 중도 · 중복지체부자유아 취학의무 지원체제의 실태 및 보호자 요구 분석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대은(1997). 장애유아의 일반유치원 통합에 필요한 기술의 중요도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유치원 교사의 인식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경(2005). 과령입학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부모 만족도 조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경, 신영, 강지현, 장지윤(2007). 장애유아 통합프로그램 운영의 A to Z. 창지사.
- 최순영, 장애인교육권연대(2005. 4. 18). 취학유예 아동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 결과.
- 허정연(1998).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원자(2005). 적령입학아동과 입학유예아동의 적응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기(1995). 국민학생의 상황불안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정(2005). 초등학교 과령입학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a Paro, K. M., Pinata, R. C., & Cox, M. J. (2000). Teachers' reported transition practices for children transitioning into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Exceptional Children*, 67(1), p 7-20.
- Loyd L. (1999). Field notes, *Early Developments*. 3(1), p 3.

- Sullivan, P. (1999).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This first school transition is crucial to a strong start for students. *Our Children*, 16-17.
- Turnbull, A. P. & Turnbull, H. R. (1990).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a Special Partnership(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설 문 지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로써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술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말씀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학유예 : 초·중등 교육법 제 1장 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1항에 의하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학유예란 의무취학 연령이 되었으나, 제 13조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한 경우를 말한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연구자 이진희

연락처:016-9699-3113

namuhaja@hanmail.net

기본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 해당사항에 √ 표시해 주세요. -

1.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조부모 ④ 기 타()

2. 부모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아버지				
어머니				

3. 부모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아버지				
어머니				

4. 가구의 월 평균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원 미 만	100~149 만 원	150~199 만 원	200~299 만 원	300만원 이 상	400만원 이 상
월평균 수 입						

5. 부모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전업 주부	생산· 노무직	판매· 서비스직	사무· 기술직	관리직	전문직	공무원	무직	기타
아버지									
어머니									

취학유예의 실태에 관한 문항입니다.

6. 취학유예한 아동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 여 ()

7. 취학유예한 아동의 현재 연령은 몇 세입니까?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만 세)

8. 취학유예한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 애 유 형	장 애 등 급				미 등 록
	1급	2급	3급	기타	

9.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일반 교육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 ② 장애 교육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 ③ 기 타()

10. 아동이 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언어치료 ② 물리치료 ③ 작업치료 ④ 심리치료 ⑤ 감각통합
- ⑥ 미술치료 ⑦ 음악치료 ⑧ 원예치료 ⑨ 학습지원 ⑩ 기 타()

11. 취학유예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가족 ② 장애아동부모 ③ TV나 인터넷 ④ 책, 잡지 ⑤ 이웃
- ⑥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생님 ⑦ 초등학교 선생님 ⑧ 기 타()

12. 현재까지(2008년 3월) 취학유예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13. 취학유예 신청 시 취학유예 신청서 외에 제출하신 서류는 무엇입니까?
해당서류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없다 ② 장애등록카드 사본 ③ 진단서 ④ 의사 소견서 ⑤ 기 타()

14. 앞으로 취학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① 1년 후(내년에) ② 2년 후에 ③ 3년 후에
- ④ 최대한 유예가 가능한 시기까지(14-1 문항 √ 표시 부탁드립니다)
- ⑤ 기 타()

14-1. 최대한 유예가 가능한 시기까지에 표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동발달의 문제 ② 적절한 교육기관 미설치 ③ 교육기간 연장
- ④ 치료지원의 미흡 ⑤ 기 타()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 번	20068013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이 진 희		한문: 李 辰 喜	영문: Jin-Hee Lee	
주소	광주시 서구 치평동 대우 106-603				
연락처	062-372-2050		E-MAIL: www-ec @ 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영문 : An Analysis of the Delay in the Entry of Disabled Children and Parents' Percep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10월 24일

저작자 : 이 진 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